

장애인복지의 당면과제



裴淵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현대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되어 감에 따라서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도 증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장애발생 원인도 주로 선천적 원인이라고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이 사회 환경적·후천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인이 될 필연성을 향시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정확한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투자 우선 순위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의 최우선 투자순위는 의, 식, 주 문제 즉, 수용시설위주와 시설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시대적 요청에 맞는,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일선 전달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선행정기관의 기능과 능력이 미약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선행정기관이 지역 사회내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시설의 서비스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도 대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상의 각종 급

장애인복지 문제는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문제와 함께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서
개인의 선심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나 서비스간 상호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업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우며, 서비스 담당기관이나 시설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일선행정기관, 일선민간기관의 서비스 전달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나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편이다.

의료재활서비스 부문에서는 각종 재활의료 서비스기관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보험 급여기간의 제한 철폐,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충,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 등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재활 의보인력의 양성과 재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보장구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 보장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립재활공학연구소의 설치, 각종 보장구 전시회 등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직업재활서비스 부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당 고용제를 강제규정으로 전환하고, 기준고용률 미이행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준고용률 초과고용업체와 장애인 우수고용업체에 대한 지원금 및 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능공 자격제도를 법제화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직무의 강화, 체계적인 직업재활 체계의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참여 시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이행에 따른 처치규정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영구 임대주택의 장애인 해당 입주제도 도입, 장애인 주택의 건축에 따른 우대금리 융자 및 각종 세제 혜택

부여, 주택 정비자금 융자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장애인 자격취득 제한 법령의 개정 또는 철폐와 각종 장애인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 및 참관비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소득보장 시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시 장애인에 대한 차등적용,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범위 확대, 생계보조 수당의 급여대상 및 급여수준 확대, 자립자금 융자제도의 개선 등을 실시해야 하며, 소득보장제도 외에 각종 세금 및 이용료의 감면 확대를 통하여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세와 같은 목적세를 신설하여 그 중 일정률을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할애 받고, 각종 광고물 및 광고매체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시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계약시 일정률의 기금을 부과하고 공동모금과 장애인 복지복권의 발행 등으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장애인복지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문제는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문제와 함께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서 개인의 선심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방치가 빈곤, 부랑, 범죄 등 사회체제나 치안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사회방술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도 안 될 것이며, 오직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